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58
------	------

발의일자 : 2024. 5. 28.

발 의 자 : 장규권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시 학교장,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실태조사 시 학교장,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나.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7조의4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5. 29. ~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실태조사)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u>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 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u></p>
<p><u>제10조 · 제11조</u> (생 략)</p>	<p><u>제11조 · 제12조</u>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p>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17. 10. 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46호, 2017. 10.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946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

- 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7조의4(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1.1.7.]